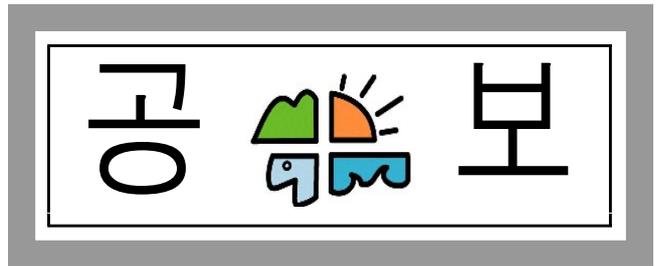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274호 2020년 7월 9일(목)

## 조 례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9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62호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에 한정하여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일 주차요금 및 월정 기간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4호(중전의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6세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과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제2호 중 “합산하여”를 “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합산하여”를 “합하여”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					
	30분까지 (1구획당)	30분초과시 매10분당 (1구획당)	1일 주차 요금	비수기(성수기외 기간)			성수기(7.1~8.31)		
				2시간이내	2~8시간	8~24시간	2시간이내	2~8시간	8~24시간
주차요금	600원	300원	6,000원	1,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4,000원	6,000원
월정기간	주간 75,000원		야간 56,000원			주·야간 131,000원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 가. 주차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때 10분단위에서 5분이 경과시 적용한다.
  - 나. 대형버스 및 화물차를 위해 별도 설치한 주차구획은 본 요금의 3배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시 주차구획을 점유한 수만큼 배로 징수할 수 있다
3. 주간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가. 4월 ~ 10월 ⇒ 08:00 ~ 20:00
  - 나. 11월 ~ 3월 ⇒ 09:00 ~ 19:00
4. 시장은 「자연공원법」 또는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주차장 및 주차목적과 방법이 동일한 인근 공영주차장은 이용객의 편의와 요금체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별도 규정한 시설사용요금표에 준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